

[별표 1의2] <신설 2003.8.18, 2006.9.25>

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방지업무(제31조의2관련)

작업의 종류	직 무 수 행 내 용
1. 프레스 등을 사용하는 작업 (제3편제3장)	가. 프레스 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. 프레스 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. 프레스 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한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. 금형의 부착·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
2.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(제3편제4장)	가.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.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.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라. 작업 중 지그 및 공구 등의 사용상황을 감독하는 일
3.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(제3편제11장제2절 제1관)	가.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.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.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
4.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(제4편제1장)	가.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.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·습도·차광 및 환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. 나목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를 기록 및 보관하는 일
5.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(제4편제5장)	가.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.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물질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
6.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·용단 또는 가열작업(제4	가.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.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(1) 사용 중의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편 제 6 장 제 1 절)	(2)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하는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(3) 발생기실의 출입구의 문을 개방하여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(4)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하는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다.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하는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라.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마. 아세틸렌 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 또는 가열하는 때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일 바. 발생기의 사용을 중지한 때에는 물과 잔류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 사. 발생기를 수리·가공·운반 또는 보관하는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를 접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 아.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
7. 가스집합용접 장치의 취급작업(제4편 제6장 제2절)	가.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.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(1)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있는 유류·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(2)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(3) 가스누출을 점검하는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(4)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다.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라. 그 작업을 시작하는 때에는 호스·취관·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·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 또는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

	마.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바.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
8. 거푸집동바리의 고정·조립 또는 해체 작업/지반의 굴착작업/흙막이 지보공의 고정·조립 또는 해체 작업/터널의 굴착작업/건물 등의 해체 작업(제6편 제1장 제2절·제3장 제1절·제3장 제3절 제1관 및 제5장)	가.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. 재료·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.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
9.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·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(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의 규정 적용 제외)(제6편 제2장 제2절)	가.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나. 기구·공구·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.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.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
10. 발파작업(제6편 제3장 제2절)	가. 점화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대피를 지시하는 일 나.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다. 점화전에 위험구역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라.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

	마. 점화신호를 하는 일 바.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피신호를 하는 일 사. 발파 후 터지지 아니한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, 용수의 유무 및 암석·토사의 낙하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아. 점화하는 자를 정하는 일 자.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유무를 점검하는 일 차. 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
11.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(제6편제3장제4절)	가.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나.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·토사의 낙하·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(含水)·용수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다.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·토사의 낙하·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
12. 화물취급작업(제8편제1장)	가.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.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.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 라.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대(荷臺)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그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
13. 부두 및 선박에서의 하역작업(제8편제2장)	가.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. 통행설비·하역기계·보호구 및 기구·공구를 점검·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.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행하는 일